

[별지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수가가 2023. 1. 1.부터 4.92%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40% 경감대상자	60% 경감대상자
30분 이상	16,190	2,429	1,457	972
60분 이상	23,480	3,522	2,113	1,409
90분 이상	31,650	4,748	2,849	1,899
120분 이상	40,280	6,042	3,625	2,417
150분 이상	46,970	7,046	4,228	2,818
180분 이상	52,880	7,932	4,759	3,173
210분 이상	58,930	8,840	5,304	3,536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